##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최수진·조정훈·임이자

구자근 • 박충권 • 박준태

안철수·김선교·김종양

인요한 · 김민전 · 최보윤

김위상 · 김 건 · 서명옥

안상훈 • 김소희 • 김장겸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 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법률 제 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출연"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보조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를 "및 융자, 보조의 대상·조건, 절차·상환 방법 등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u>출연</u> ) ① 중소벤처기업부	대한 <u>지원</u> ) ①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	
혁신사업에 <u>출연할 수 있다</u> .	출연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u>융자, 보조 할 수 있다</u>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	②
급·사용·관리 <u>등에</u> 필요한 사항	<u>및 융자, 보조의</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조건, 절차・상환 방법
	<u>등에</u>